

예산총칙

제1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계	7,861,674,135	235,850,224
일	반 회 계	6,456,212,579	193,686,377
특	별 회 계	1,405,461,556	42,163,847
공 기 업 특 별 회 계		289,188,668	8,675,660
① 상 수 도 사 업		136,263,437	4,087,903
② 하 수 도 사 업		152,925,231	4,587,757
기 타 특 별 회 계		1,116,272,888	33,488,187
① 의 료 급 여 기 금		474,616,850	14,238,506
② 수 질 개 선		6,024,972	180,749
③ 풍 영 정 천 유 지 용 수 공 급 사 업		228,874	6,866
④ 하 남 3 지 구 도 시 개 발		3,092,979	92,789
⑤ 택 지 개 발 사 업		274,229	8,227
⑥ 교 통 사 업		33,803,422	1,014,103
⑦ 광 역 교 통 시 설		4,232,418	126,973
⑧ 학 교 용 지 부 담 금		3,990,545	119,716
⑨ 산 업 단 지		5,170,776	155,123
⑩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	75,809,410	2,274,282
⑪ 도 시 철 도 사 업		295,973,402	8,879,202
⑫ 소 방		213,055,011	6,391,650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“해당 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“계속비사업(변경)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“4,997,617천원”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발행액은“619,400,000천원(고금리 지방채 차환 266,800,000천원 포함)”으로 한다.

지방채차입한도액(기본한도)은“237,500,000천원”으로 한다.

제8조「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」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제9조 금회 추경 이후에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,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(이월 포함)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